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8호의6서식](2014.03.14 개정)

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

(앞쪽)

인적사항	법 인 명	
	소재지	
	대 표 자 성 명	
	사업자등록번호	

환 급 신 청 명 세

① 종목명 (액면가액)	② 종목코드	③ 취득일	④ 매도일	⑤ 보유기간	⑥ 이자율	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(①×⑤×⑥)	⑧ 세율	⑨ 법인세
( )								
( )								
( )								
( )								
( )								
( )								
환급신청세액						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
2. ① 종목명란과 ②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.

3. ③ 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적습니다.

4. ④ 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.

5. ⑥ 이자율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.

6.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(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)는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「별지 제10호서식(을)」과 대차거래채권 확인서(별지 제68호의5서식)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